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성 및 가치 제고 방안」 및 4분기 동향

2024.12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08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15
IV. FAQ	17
V. 그룹·센터 소식	22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2024 New 국제내부감사표준 도입에 따른 내부감사의 효과성 및 가치 제고 방안

2024년 11월,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Governing a relevant, effective, and valued internal audit function」

- 2024년 1월,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는 새로운 국제내부감사표준(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을 발표했으며, 이 기준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
-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부감사의 권한(mandate) 개념을 소개하고 명시함
- 신규표준 이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및 객관성, 거버넌스 및 감독, 역량 및 전문성, 리스크 기반 접근, 검증과 자문 서비스 간의 균형, 유연성, 기술 활용, 품질 보증 및 개선, 윤리 기준에 대한 준수
- **新 국제내부감사표준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원문 다운로드

구분	내용
감독·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표준의 이행에 대해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에 대한 감독·지침 제공 • CAE로부터 필요정보를 확보하여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과의 일치 여부 확인
자원배분·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표준 이행 준수를 위한 내부감사부서의 자원(예산·인력) 보유 현황 점검 • 준비도 평가 수행, 필요조치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 • 내부감사부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외부감사인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변경사항, 영향에 대해 소통·협력
성과진행상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표준을 기대성과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CAE에 내부감사전략, 성과목표·측정 관련 의견 제공
내부감사 기능의 성숙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도 제고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전략·자원 관련 논의 진행, 전략·성과목표·측정에 반영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

2024년 9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Governance of AI: A critical imperative for today's boards」

- 지금까지 AI에 대한 이사회 참여는 제한적이고, 특히 생성형 AI의 기회, 위험을 감독하기엔 미흡하며, 이제는 이사회가 AI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점임
- '24.6월, 이사회가 AI 거버넌스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함
 - 서베이 대상: 57개국 이사회 멤버, 최고경영진 약 500명
- 이사회가 AI 관련 안건 논의 빈도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응답자 45%가 이사회에서 아직 AI 관련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기별(25%), 1년에 한번(16%), 모든 이사회 회의 시(14%) 순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AI에 대한 이사회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임을 보여줌
- 기업의 AI 도입 속도 평가 관련하여, 응답자 44%가 '(도입했으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사회가 AI 감독을 고민하고, 정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시사함



기업의 AI 도입 속도 평가	
AI/생성형 AI는 조직과 관련 없음	5%
AI/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음	35%
(도입했으나) 속도를 더 높여야 함	44%
만족	14%
매우 만족	2%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 (계속)

2024년 9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Governance of AI: A critical imperative for today's boards」

- 이사회 AI 이해도(지식·경험) 관련하여 응답자의 79%는 '이사회 AI에 대한 지식·경험이 제한적'이라고 응답함
 - 제한적으로 이해함(41%), 미흡(30%), 보통(19%), 전혀 모름(8%), 매우 잘 이해함(2%) 순으로 나타남
 - 이사회 AI 이해도를 높이는 유용한 방법은 AI를 직접 경험·체험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이사회는 AI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체감하고 산업별 AI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이사회 AI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AI 안건 상정논의', '거버넌스 구조 정의', 'AI 리터러시* 평가 및 향상'이 있음



원문 다운로드

* AI의 개념, 기능 및 AI가 실생활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이사회 책임 영역

(중복응답 포함)



윤리적 사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감독



AI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전략 개발



위험·기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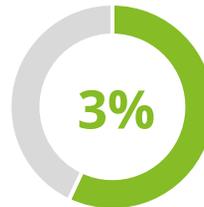
AI 적용 및 구현에 대한 감독



AI와 그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 얻기



인재 개발 및 양성



투자 및 자원 할당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이사회와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

2024년 9월,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Brand and reputation stewardship」

- 기업 브랜드 손상은 기업 가치, 윤리적 기준, 제품 신뢰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분야임
 - 이러한 광범위한 요소를 감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회사 이미지에 대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은 기업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감독 접근 방식이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의 접근 방식



원문 다운로드

구분	주요 내용
브랜드 가치 조정	· 사명과 가치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략 개발 및 주기적 업데이트 권장
임원 인센티브	· 장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임원 보상 계획에 브랜드 및 평판 관련 지표 포함
의사결정 프로세스	· 경영의사결정시, 장기적 평판 영향 사항을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도록 요청
이사회 관리	· 이사회 평가 시, 이사가 회사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 고려

- 브랜드 및 평판 개선 관련 이사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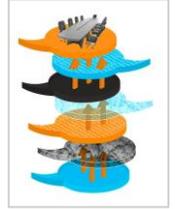
이사회 체크리스트

- 현재 브랜드 전략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는가?
- 회사는 현재 브랜드 건전성과 평판을 어떻게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지표들이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가?
- 현재 기업문화가 브랜드 평판에 어떤 영향(긍정/부정)을 미칠 수 있는가?
- 이사회는 브랜드 및 평판 관리 논의에서 CMO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브랜드와 평판 고려사항을 경영의사결정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활용하는가?
- 중대한 평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의 위기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대한 시장 변동이나 사회적 변화에 맞춰 브랜드 전략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회사는 브랜드 가치와 평판 관리 노력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가?

기술을 선도하는 이사회: 기술 논의를 촉진하는 방안

2024년 7월, Deloitte Insights, 「The tech-forward boardroom: Fostering richer boardroom conversations on technology」

- 기술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이사회와 기술 리더는 조직 내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양방향 대화를 나눠야 함
- 기술이 조직 전반에서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려는 이사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딜로이트의 2023 글로벌 기술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의 67%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기술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의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기술·통신은 신임 이사들의 최다 출신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기술 리더(최고정보책임자,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가 기술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서베이에 참여한 이사회 구성원 중 36%만이 기술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최고경영진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술 문제에 대한 이사회 감독 범위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함
- 이사회는 아래 질문을 통해 최고정보책임자·최고기술책임자와의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원문 다운로드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사회 체크리스트

-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기술 장애물은 무엇인가?
- 기술 투자의 실행/성장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조직은 어떻게 잠재적인 기술 맹점을 완화할 수 있는가?
- 향후 어떤 수익 채널을 추구하고 싶은가?
- 다른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 조직의 기술 인재 역량은 어떠한가?
- 자원의 제약이 없는 경우, 어떤 점진적인 기술이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합한 문샷(Moonshot)*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2024.12.11 (수)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24.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시행됨
 -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기간(~25.1.2.)이 종료된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임
- 주요 변경 내용

1.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
 - 해당 위원회에서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할 예정

2.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 명시

-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 외에,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 사유도 고려할 예정임을 명시

3.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의 미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예정
-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하여 보다 구체화



'25~'27년 외부감사 적용 표준감사시간 확정

2024.12.05 (목)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으며, '25.1.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주요 내용

1.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연장

- (자산총액 2백억원 미만 중소기업) 24년까지 적용유예했던 표준감사시간을 '27년까지 적용유예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적용률도 추가인상하지 않고 '25년까지 부분적용 연장
 - '26년 이후 부분연장 여부는 '25년 하반기 중 위원회 심의 예정

2.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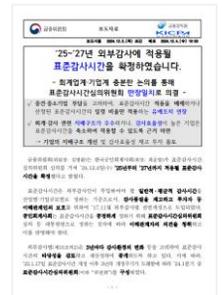
-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기업들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을 보완함
 -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되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정비사항 반영

-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사항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구분	변경	비고
비상장사	자산 5천억원* 이상: 검토 자산 5천억원* 미만: 면제	'23.5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상장사	자산 1천억원 미만 외부감사 면제 (‘검토’ 의무는 유지)	'23.1월 외부감사법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



원문 다운로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2024.12.02 (월) 금융위원회

● 주요 내용

1.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 할 예정임

2.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 비계열사간 합병 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함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 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3. 합병 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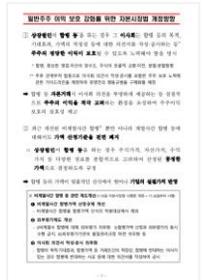
-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여,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

4.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최대 20% 우선배정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 향유 기회를 제공함

5.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거래소 일반주주 보호노력 심사기간 무제한

-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거래소 세칙 개정)하여 상장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함



원문 다운로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2024.11.28 (목)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11.28)하여 감독·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하고,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함
-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

1. 단기성과 중심의 문화

-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음
-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함

2. 이사회 기능의 강화 필요성

- 지주·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음

3.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 금융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됨
-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성 강조함
-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현안은 1)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2)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3)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임
- 이사회 의장들은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힘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퇴출

2024.11.27 (수) 금융감독원

-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 적발되면서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음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18년 285개에서 '23년 467개로 63.9% 증가함
-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signal)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위반 확인 시 신속 조치하여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임
 -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등을 종합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24년 중에는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임
- 외부감사인에 대한 당부사항



1.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부정·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함

2.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 확보

-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감사인지정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으므로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3. 부정행위 보고절차 철저히 준수

- 부정행위, 법령위반, 회계처리기준위반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사인의 통보내용에 대한 회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확인해야 함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11.19 (화) 금융위원회

- 지난 11월 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일(11.26일 잠정)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1.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에 대한 개선

- 기존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함

2. 외부평가제도 개선

-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함
-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적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임



원문 다운로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5.5.13일 부터 적용)

2024.11.12 (화)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함(11.12)
-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구분	내용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함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화함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이사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게 됨 •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됨
준법감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검직하는 경우,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함
보고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함 •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 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을 두도록 함 (준법감시인 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개정 규정은 '25.5.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동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7.5.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함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4분기 주요 거버넌스(G)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충실 투명하게 공개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5개社 선정 [\[파이낸셜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배구조 개선·주주보호 실효적' [\[아주경제\]](#)
-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전반적 개선 [\[그린포스트코리아\]](#)
-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감사' 3년 유예 추진 [\[경향신문\]](#)
-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아주경제\]](#)

이사회·감사위원회



- 은행 이사회 만난 이복현 '감독 기능 강화해야...CEO 선임도 투명하게' [\[한국경제\]](#)
- 금감원, 책무구조도 수정 요구... 금융권 '이사회만 3번 열어야' [\[조선비즈\]](#)
- 감사위원 2명 이상 확대시, '지주사 경영불안 가중' [\[한국경제\]](#)
- '女 사외이사 모셔라'...7개 상장 보험사 줄줄이 임기 만료 [\[FETV\]](#)
- 거래소, 상장사 이사 대상 별류업 설명회...'책임있는 역할' 강조 [\[이투데이\]](#)
- 기업 여성 임원, 2년새 3%p 증가... '사외이사'가 대부분 [\[뉴시스\]](#)
- 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 매출액 30대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8.8%, 여성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더나은미래\]](#)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8호 발간 [\[파이낸셜뉴스\]](#)
- 늘 화두인 '내부회계'...한국 딜로이트 그룹-상장협, 교육 영상 제작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순환경제' 실현 위한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제시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85%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CFO, 공시 준비 앞장서야' [\[아시아경제\]](#)
- 삼점삼, 딜로이트 안진과 '중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개시 [\[해럴드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시리즈 세미나 시작... 첫 주제는 '거버넌스'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4분기 주요 거버넌스(G)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한공회, 70주년 맞이... '회계투명성 높이기 위해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 3년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확정... '회계투명성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이데일리]
- 보험사, '해지율 계산' 기준 강화... 금융당국, IFRS17 회계 투명성 제고 나서 [이코노믹리뷰]
- 12월부터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공시 강화... 리픽싱 합리화도 [조세일보]
- 밸류업 기업 혜택도 좋지만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가치 [매일경제]
- IPO 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강화된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발표 [더밸류뉴스]

부정행위방지



-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방지 위한 통제 활동 공시 기준 마련 [서남투데이]
-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 지침' 시행 [KBS뉴스]
- "GA 제재 강화"... 금감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청년일보]
- 금감원, 올해만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37명 조치... 예방교육 지속 [대한경제]
- 원자잿값 담합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아시아투데이]
-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뉴시스]

규제동향



-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 지장'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뉴스1]
- 금감원 '선제적 회계 감리로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연합인포맥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이번주 국회 제출' [MBC 뉴스]
- 금융위,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 책임규명 판단 절차 강화 [조선비즈]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SBS Biz]
- 한국거래소, 2024년 ESG 평가 발표... 중위권 약진, 상위 그룹도 지각 변동 [임팩트온]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자사주 팔면 차익 모두 반환' [매일경제]

M&A



- 국내 PEF 20년 'M&A 시장 핵심주체 성장... 오퍼레이션 밸류업 역량 강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 덩치 키우는 제약-바이오 업계... 작년 M&A 규모 75% 증가 [연합뉴스]
-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 M&A 공시 의무도 강화 [한국경제]
- 내수 한파인데도... 프랜차이즈 M&A 쑥 [매경증권]
- 공정위 'AI 반도체 기업 M&A, 경쟁제한 우려 검토' [네이트 뉴스]
- 한국, 적대적 M&A 사례 3배 증가... '주주환원 강화 경향' [연합인포맥스]
- '늪은' 중소기업, M&A로 승계한다... 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또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의 주요일정이 궁금합니다.

- 연결 종속회사의 경우 지배회사와는 달리 해외 및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 따라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할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자회사, 종속회사의 자금사고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함
 - 종속회사에 대해 기존에 구축된 통제활동이 부정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적정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속회사의 유형별, 지역별 통제활동의 수립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함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연결 종속회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부정위험 평가: 지배회사와 상이한 산업/시장에서 운영되는 종속회사를 고려하고, 각 종속회사 경영진의 통제무시 및 권한남용에 취약한 정도를 고려해야 함
 - Scoping 재검토: 연결그룹에서 차지하는 자금활동에 대한 각 종속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Scoping 재검토가 필요함
 - 전사수준통제: 종속회사 임직원의 내부신고 제도의 활성화 및 자금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그룹 규정 정립이 필요함
 - 자금통제: 그룹의 자금표준통제가 정립되고 표준통제로 적용이 어려운 종속회사의 유형별 표준통제가 고려되어야 함
- 아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의 주요 milestone과 일정의 예시로, 업종에 따라 milestone과 일정이 조기에 계획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맞게 아래의 사례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1)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세미나, 세션 I-1. 자금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2024.09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또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의 주요일정이 궁금합니다. (계속)

<표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 milestone ²⁾

구분	Milestone	수행 주체	일정(예시)
계획 단계	전기 사후평가 및 위험평가 고려하여 당기 Scoping 결정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운영 조직 별 역할과 책임 확정 및 인원 배정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그룹 표준 통제 및 종속기업 통제 현황 점검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변화관리 수행	지배/종속기업 경영진	4월-5월
	평가대상 부문별 communication 수행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교육 수행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평가대상(부문별) 업무 프로세스별 RCM 확정	지배/종속기업 경영진	5월-6월
	평가 일정 수립 및 그룹 평가 지침서 작성 및 배포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5월-6월
	외부감사인과 당기 평가 범위 및 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5월-6월
실행 단계	설계평가 및 중간 운영평가, 미비점 평가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0월
	부문경영진의 1차 미비점 제출 및 취합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또는 경영진)	6월-10월
	설계평가 및 Interim 운영평가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검토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0월
	그룹의 중간 평가결과(설계·Interim 운영, 미비점평가)를 감사인과 공유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7월-1월
	잔여 기간 운영 평가, 미비점 평가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11월-12월
	잔여 기간 운영 평가 결과 취합 및 미비점 식별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11월-12월
	평가 진행 경과에 대한 평가 그룹 내 정기 progress meeting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2월
	설계평가 및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2월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 및 감사 주요 milestone과 일정」, 2024.11.

2.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함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부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이 264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122곳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임 ¹⁾
-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선임기한 ²⁾ [사업연도 개시일 (D)]	사업연도	감사인자 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주권상장회사	D + 45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3개	등록회계 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³⁾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⁴⁾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³⁾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3),5)}	

1) 금융감독원,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2024.12.12.

2)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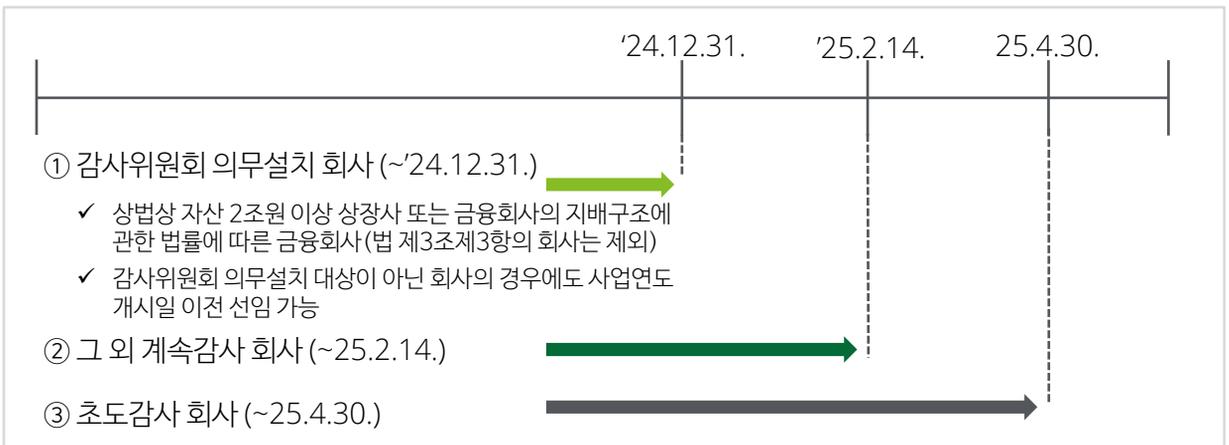
3)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

4)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5)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2.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속)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감사인 선임기한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40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2.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속)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함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UPCOMING EVENT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 Governance(이사회·감사위원회) Calendar

구분	내용
<p>개요</p>	<div style="float: right; margin-bottom: 10px;"> PC 버전 다운로드 Mobile 버전 다운로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2025 Governance Calendar' (Mobile/PC 버전)를 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2월 넷째 주 배포 예정</p>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2025 Governance Calendar' (Mobile/PC 버전)를 제작하였음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 오전 01: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 전략과 운영에 생성형 AI를 보다 광범위하게 통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이사회는 조직의 AI 접근 방식을 감독하는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사회는 모든 중요 안건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생성형 AI 구현이 적절한 관리 체계 하에 투명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AI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생성형 AI 이사회 스튜어드십에 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도 공유할 예정임

 신청하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세미나 성료 |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및 YouTube 업로드 예정입니다.

-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14:00 ~ 16:35
- 장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3F)

Agenda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14:00 ~ 14: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14:05 ~ 14:45	I. 더욱 정밀하게 - 자금부정통제 공시 체크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14:45 ~ 15:05	II.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체크포인트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 그룹 파트너
15:05 ~ 15:20	Break Time	
15:20 ~ 15:50	III. 2024 회계연도 결산, 핵심준비사항은?	김태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품질관리실 파트너
15:50 ~ 16:30	IV.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수석위원
16:30 ~ 16:35	Closing Remarks	강상욱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금번 세미나는 2024년 결산준비와 함께 자금부정 통제부터 기업 밸류업 및 디지털을 활용한 공시까지, 급변하는 공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음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장수재 대표는 “공시 및 결산 업무의 주요 이슈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은 기업들의 회계감사 관련하여 기업의 신뢰성 강화와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세미나 성료 |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및 YouTube 업로드 예정입니다.

Session I. 더욱 정밀하게 - 자금부정통제 공시 체크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 최근 강화된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동향과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통제기술 및 점검결과 작성 사례를 소개함
- 자금부정통제 공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점검사항을 제언함

Session II.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체크포인트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그룹 파트너

- 국내 밸류업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의 평가포인트와 공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밸류업 공시의 핵심포인트를 강조함
- 밸류업 공시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과 준비사항을 제시함

Session III. 2024 회계연도 결산, 핵심준비사항은?

김태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품질관리실 파트너

-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제1007호)의 주요 개정사항 및 공급자금융약정의 공시사항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중점 심사항목과 관련된 감리 사례를 중심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준비사항을 논의함
- Session IV.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수석위원

- 기업 공시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공시 및 결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업 공시 효율화 솔루션인 다크컨버터, 사업보고서 컨버터, XBRL 컨버터 등 딜로이트 디지털 에셋(asset)과 연결효율화 서비스인 7 click 등을 활용한 사례를 선보였음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